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 동향 및 개선방안



임 정 환
상표사업팀

1. 서론

2005년 7월 1일부터 “보성 녹차”, “영광 굴비” 등 지역 특산물 명칭의 지리적 표시도 상표법상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만 이들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독점배타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권한 없이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죄에도 해당되어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다.

얼마 전 “장흥 표고버섯”이 국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1호로 등록되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도입 후 약 1년 반 만에 첫 등록상표가 나온 것이다. 다만, 당초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총 18건 밖에 출원되지 않았고, 대다수가 등록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개요 및 출원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개요

1. 지리적 표시의 개념

(1) 지리적 표시¹⁾의 정의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보성녹차”, “서산머늘”, “안성유기”처럼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명 지역특산물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표시하는 지리적 명칭을 말한다.

즉,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정 품질·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2) 지리적 표시의 특징(인접개념과의 비교)

지리적 표시는 상표, 단체표장/증명표장, 품질인증, 원산지 표시와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지리적 표시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각각의 차이를 설명한다.

1) 상표와의 비교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양자 모두 출처표시 기능 및 품질표시적 기능,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며 지식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보호되는 표장이라는 점에서는 상표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 주는 표장인데 반하여 지리적 표시는 당해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시켜 주는 표장이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 상표와 같이 하나의 업자가 다른 경업자들을 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독점적 소유자”는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단체표장/증명표장과 비교

1)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2).

지리적 표시는 각국의 보호체계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에 차이는 있으나 규정된 등록요건만 충족시키면 해당 지역의 여러 생산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과 그 형태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단체표장과의 비교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이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구상표법 제2조 제3항)을 말한다.

단체표장은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며, 단체의 신용에 의하여 거래자, 수요자에 대하여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고 고객흡인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품질 보증적 기능이 강하다. 또한 정관에 당해 단체가 사용하는 자의 범위, 사용조건, 사용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표와의 차이는 단체표장은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및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상 단체표장의 침해로 인해 실제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자는 당해 단체의 소속업자이지만 단체표장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사용금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단체만이 할 수 있다.

■ 증명표장과의 비교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은 단체표장과 유사한 제도로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나 미국의 증명표장과 한국의 단체표장은 그 내용상 유사한 점이 많다. 미국의 경우 증명표장은 특정지역의 산물이나 품질 또는 제조방법을 증명하거나, 특정단체(농협이나 노동조합 등)의 구성원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 표지로서 지리적 명칭에 대한 등록이 허용되고 품질에 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증명표장권리자가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여서는 안되고, 소유권은 정부기구 등과 같이 객관적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자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증명표장은 단체의 소속업자(민간)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마련된 단체표장과 구별된다.

또한 상표사용허락은 상표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

해 결정되는 반면 증명표장권자는 일정한 품질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할 수 없고 증명표장을 사용하도록 반드시 의무적으로 허락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표와도 구별된다.

3) 품질인증과의 비교

지리적 표시는 특정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요인을 등록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품목이 산지의 유명도, 품질의 우수성, 생산조건 등 일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품질인증 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품질인증은 상품의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지리적 표시는 이를 핵심요소로 하고 있고, 또 품질인증은 일정 기간동안만(보통 1년) 인증을 받고 갱신이 필요하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제도를 통해서 10년 단위로 존속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품질인증은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지리적 표시는 원칙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특정지역의 단체에 한한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4) 원산지표시와의 비교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국가를 의미하고, 원산지 표시란 상품에 생산, 제조, 가공국명을 표시토록 하는 것을 말하며, 국산농산물의 경우 시/군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입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원산지 국명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물품의 생산 또는 가공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점에서 원산지 표시와 공통점이 있으나, 원산지 표시는 국명 또는 행정구역명을 표시하는 반면 지리적 표시는 국명 또는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지리적 환경요인에 의해 지역을 구획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는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의 존재나 품질 등의 특성과 지리적 환경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이 필요 없으나, 지리적 표시는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의 존재와 품질 등의 특성과 지리적 환경과의 본질적 연관성을 필요로 하고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끝으로 원산지 표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지리적 표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출원인이 별도로 신청하고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권

리로서 등록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2.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의 예

외국의 지리적 표시로는 Medoc(포도주, 프랑스), DARJEELING(차, 인도), Roquefort(치즈, 프랑스), Tequila(증류주, 멕시코), Jaffa(오렌지, 영국) 등이 있으며, 국내의 지리적 표시로는 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 등이 있다.



Medoc



DARJEELING



Roquefort

3.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법의 주요 내용

(1) 지리적 표시 정의 및 단체표장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규정

“지리적 표시”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2조 제1항 제3호의 2 및 제3조의 2).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의 인정

종전에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장은 산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제3항).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 배제 및 미등록 유명 지리적 표시의 보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선출원(先出願)되어 등록된 경

우에는 그 등록된 단체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미등록 유명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도 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제7조제1항제7호의2·제8호의2·제9호의2 및 제12호의2).

(4)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발음은 같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 해당하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 모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제7조 제6항, 제8조 제6항 제2호 및 제90조의 2).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 제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나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제51조 제2항).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의 무효·취소심판사유 추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을 무효심판청구사유로 추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 후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의 단체가입을 금지하는 경우 등을 취소심판사유로 추가하였다(제71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3조 제1항 제5호, 제10호 내지 제12호).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동향 분석

1. 분석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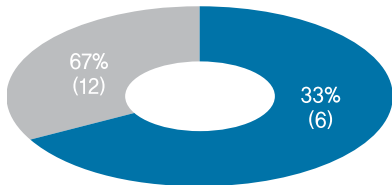
분석대상은 상표법 개정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입법화된 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 출원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2005년 7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다만, “44-2006-12”의 경우 데이터 오류로 인해 분석대상

에서 배제하였다.

2. 출원동향 분석

(1) 연도별 출원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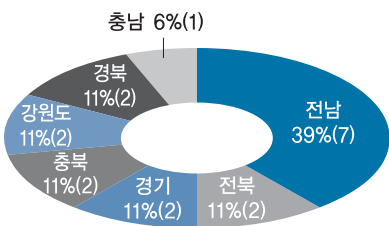
2005년 7월 1일 법 시행과 함께 “보성녹차”, “남한강” 상표가 각각 2건 씩 총 4건이 출원되었고, 이후 2건이 더 출원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시행 첫 해인 2005년에는 총 6건이 출원되었다. 다음 해인 2006년에는 상반기에 9건, 하반기에 3건이 출원되어 총 12건의 상표가 출원되었다.



〈연도별 출원동향〉

(2) 지역별 출원동향

전남이 “보성녹차” 4건의 출원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했으며, “한남모시” 1건을 출원중인 충남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경기 등이 각 2건씩 출원 했다. 또한 각 지역의 남·북도를 합친 경우 전라도가 9건으로 1위이며, 충청도가 3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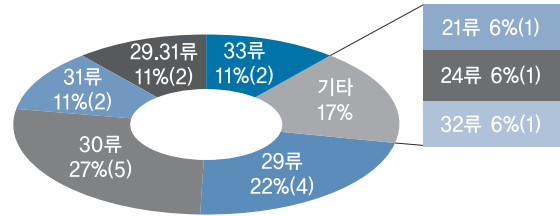


〈지역별 출원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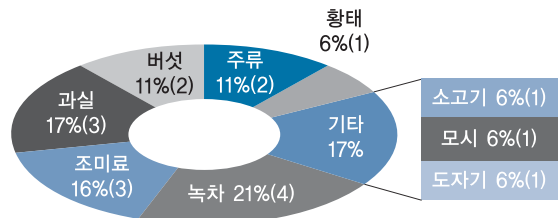
(3)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별 출원동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특성상 지역특산품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제29류(농수축산물), 제30류(차류), 제31류(야채, 과일 등)에 총 18건 중 13건이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제33류(주류), 제21류(주방용품, 도자기 등), 제

24류(직물), 제32류(맥주, 음료)에도 출원 되었다. 지정상품별로는 “녹차”가 4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상품으로 “조미료, 과일, 버섯 등”에 출원되었다.



〈상품분류별 출원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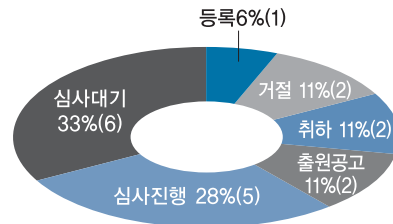


〈지정상품별 출원동향〉

(4) 심사 진행동향

2005년 출원건 중 1건(제44-2005-5호)을 제외하고 모두 심사가 완료 되었으며, 2006년 출원건은 심사진행 중 이거나 심사대기중에 있다. 이 중 “장흥 표고버섯”(제 44-2005-6호)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1호로 상표등록(2006. 11. 20)이 되었고, “고흥유자”(44-2006-4), “양양송이”(44-2006-6) 2건은 출원공고 되었다.

이미 거절결정 되었거나 심사진행중인 상표의 대다수는 ①정의규정 불합치(상표법 제 23조 제1항 제4호²⁾), ②정관 필수 기재사항 누락(상표법 제 23조 제1항 제6호³⁾)을 이유로 거절결정이나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상태이다.



〈심사 진행동향〉

2)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상표 정의의 규정에 의한 표정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정의 경우에 그 지리적 표시와 표정이 동항 제3호의2 및 제3호의4(지리적 표시 단체표정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와 표정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9조 제3항(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서에 그 취지 및 정의 합치 입증 서류 제출)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정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3. 출원 현황

(2006. 12. 31 기준)

연번	출원번호 (출원일자)	표 장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	출원인 (대리인)	심사진행상황
1	44-2005-1 (2005. 7. 1)	보성녹차	30류 : 녹차음료 (녹차를 주원료로 한 것임), 녹차, 잎녹차, 녹차티백	보성녹차 영농조합법인	'06. 4. 14 : 출원취하
2	44-2005-2 (2005. 7. 1)	보성녹차	32류 : 녹차분말, 녹차농축액, 녹차엑기스, 녹차음료 (녹차를 주원료로 한 것임) 등	보성녹차 조합법인	'06. 5. 25 : 의견제출통지 (제23조제항제4호 및 제10조제1항) '06. 6. 26 : 출원취하
3	44-2005-3 (2005. 7. 1)	남한강	29류 : 양념, 갖김치, 깍두기, 뽕나물, 동치미, 맛김치, 백김치, 파김치 등	(총주사) 살미농협합동조합	'06. 3. 16 : 거절결정 (제23조제항제4호 및 제6호, 제10조제1항)
4	44-2005-4 (2005. 7. 1)	남한강	30류 : 깨소금, 겨자가루, 계피가루, 고춧가루, 냉이가루, 마늘가루, 버섯가루, 산초가루, 생강가루 등	(총주사) 살미농협합동조합	'06. 5. 8 : 거절결정 (제23조제항제4호 및 제6호, 제10조제1항)
5	44-2005-5 (2005. 9. 16)	보성녹차	30류 : 녹차, 잎녹차, 녹차티백, 녹차음료	영농조합법인 보성차생산자협의회	심사진행중 '06. 6. 21 : 정보제공
6	44-2005-6 (2005. 10. 31)	장흥 표고버섯	29류 : 냉동 표고버섯, 건조된 표고버섯 31류 : 표고버섯	영농조합법인 정남진장흥 표고버섯연합회	'06. 11. 20 : 등록
7	44-2006-1 (2006. 1. 11)	보성녹차	30류 : 녹차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심사진행중
8	44-2006-2 (2006. 2. 24)	진도홍주	33류 : 홍주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	심사진행중
9	44-2006-3 (2006. 2. 28)	인제용대황태	29류 : 황태	영어조합법인 인제용대황태	심사진행중
10	44-2006-4 (2006. 4. 11)	고흥유자	31류 : 유자	고흥유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출원공고 : 2006. 12. 21
11	44-2006-5 (2006. 4. 25)	이천한우	29류 : 소고기	사단법인 이천한우회	심사진행중
12	44-2006-6 (2006. 5. 29)	양양송이	29류 : 송이 31류 : 송이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	출원공고 : 2006. 12. 21
13	44-2006-7 (2006. 6. 5)	순창고추장 SunChang Kochujang	30류 : 고추장	영농조합법인 순창장류연합회	심사대기중
14	44-2006-8 (2006. 6. 19)	한산 모시	24류 : 모시직물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	심사대기중
15	44-2006-9 (2006. 6. 29)	고창 복분자주	33류 : 복분자주	고창으뜸복분자주 영농조합법인	심사대기중
16	44-2006-10 (2006. 8. 29)	경산대추	29류 : 대추	경산대추생산자 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심사대기중
17	44-2006-11 (2006. 8. 30)	경산대추	31류 : 대추	경산대추생산자 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심사대기중
18	44-2006-13 (2006. 12. 06)	이천도자기	21류 : 도자기, 도자기제 그릇, 도자기제 꽃병 등	이천민속도자기사업협동조합	심사대기중

4. 결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제도는 기존에 등록받을 수 없었던 지역특산물 명칭을 등록받을 수 있게 하여 정당한 지리적 표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 및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역특산물의 보호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1) 부실권리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에는 일반 상표 출원절차와는 달리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제출서류를 다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출원절차가 복잡하고, (2) 기존에 거절되던 지리적 표시에 상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법인만이 출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단체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역 생산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동일상품이 아닌 유사상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등 일반 상표권에 비해 독점배타권으로써의 효력범위가 현저히 좁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출원률 저조 및 제도 활성화를 방해하는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도입 취지 및 활성화를 위해 제출 서류 및 기재 사항의 간소화, 효력범위의 확장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더하여 제도 홍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㉔

■ 인용자료

-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길라잡이(특허청, 2005. 07)
- 2) 개정 상표법 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2005. 04)
- 3) 지리적 표시 관련 주요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지적재산 21, 94호(2006. 01))
- 4) 상표법 제2판(문삼섭, 세창출판사, 2004)
- 5) www.kipo.go.kr (특허청)
- 6) www.kipris.or.kr (키프리스)